

● 보험가입대상

제품제조업체 및 유통업

● 보상범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2. 비용손해(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화해·조정비용)
3.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4.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지진, 홍수 등으로 생긴 손해
3. 원자핵물질의 방사성, 방사능 오염사고
4.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에 입은 신체장해손해
6. 생산물의 성질, 하자로 생긴 손해
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
8. 타인에게 인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